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다10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재다29486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7. 9.

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고(재심원고)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재형

 대법관 민유숙

주 심 대법관 이동원

 대법관 노태악